

3.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☐ 개정이유

상수도관리사업소 기구가 상수도사업소로 승격되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의 간사를 변경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위원회는 안건작성,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수질시험담당으로 한다(안 제8조).

☐ 검토내용

- 상수도 시설의 증설에 따라 상수도 사업소 기구·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고
-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개정으로 상수도 사업소의 소장이 5급으로 보직됨으로써 동 조례에 의한 간사를 상하수도과장에서 상수도사업소 소속의 수질시험 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